

전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130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197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2019.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7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패소한 B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해서 공사대금 등 7,9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2019. 7. 29.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B이 무자력인 사실은 인정된다.
- 2) 청구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취소를 구하고 있는 B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9. 7. 29.자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원고는 B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2019. 4.경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변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B과 피고 사이에 '2019. 7. 29.자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7. 29.'은 원고 주장과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이 2019.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취소를 구하는 B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가 '2019. 4.경에 있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행위'라 선택하더라도,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들인 E, F, G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초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가,

2019. 4.경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된 것일 뿐,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보유한 사실은 없는 점, ② B은 조립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매도한 다음 건축비를 정산하고,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대지 소유자들이 B의 제안을 수락하여 B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지는 않은 채, 대지 소유자들 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바, B과 위 대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대지 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단 소유권을 대지 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킨 다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공사비와 수익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후에 이를 피고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B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